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-63호

고 시

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호-330호(1996.12.1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59호(2001.8.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13호(2010.9.2.), 제2017-427호(2017.11.23.), 제2020-122호(2020.3.26.), 제2023-54호(2023.4.27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도시관리계획(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제일시장 일대)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실효를 위하여,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(변경없음)
-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)
 -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☐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32	10	국지 도로	95	신정동 1029-47	신정동 1029-25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1982.04.03.)	
변경	소로	1	32	6	국지 도로	75	신정동 1029-47	신정동 1029-24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1982.04.03.)	부분 실효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3	50	6.6 ~ 8	국지 도로	38	신정동 1029-11	신정동 1029-24	일반 도로	-	서고시 259 (2001.08.03.)	
폐지	소로	3	50	6.6 ~ 8	국지 도로	38	신정동 1029-11	신정동 1029-24	일반 도로	-	서고시 259 (2001.08.03.)	실효

☐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로명	변경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소로 1-32	· 변경 - 폭: 10m→6m - 연장: 95m→75m	·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동 1029-29 일대) 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부분실효
소로 3-50	· 폐지 - 폭: 6.6m~8m - 연장: 38m	· 특별계획가능구역(신정동 1029-29 일대) 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효

☐ 실효일: 2021.08.03.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④ 특별계획(가능)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)

4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가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

☐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해제	특별계획가능구역	양천구 신정동 1029-29 일대	7,558	-

□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	비 고
해제	특별계획가능구역	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	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효력기간 만료된(2025.3.26.)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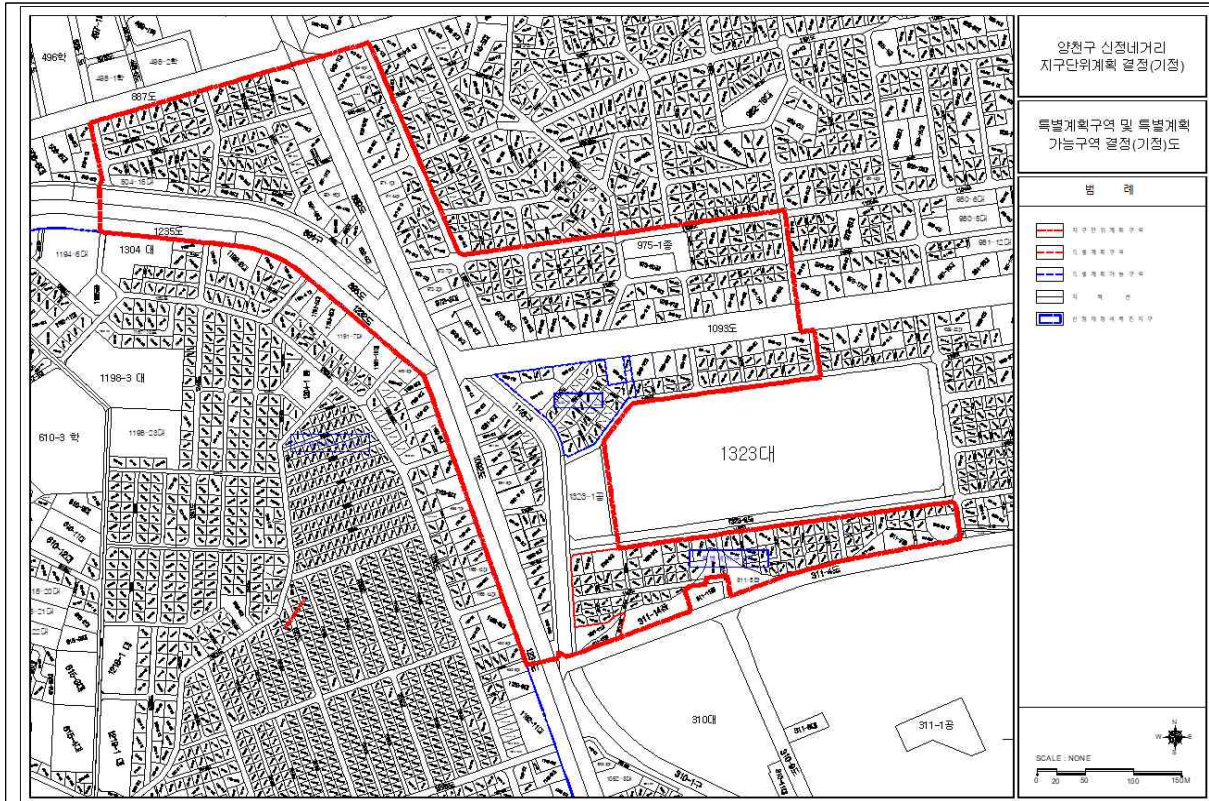
㉕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Ⅲ. 관계도면 : 「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결정 및 지형도면 (변경)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2620-3517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□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(기정)



□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(변경)

